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09
----------	------

제 안 년 월 일 : 2024년 4월 26일

제 안 자 :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음.
- 또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 조례 청구로 폐지조례안이 발의(2023.3.13.)된 바 있음.
-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2023.11.29.)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과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